

	담당	팀장	대표
결재			

간주근로시간제 합의서

1. 회사 기본정보

사업장명	대표자	합의일자	총 근로자
		20 년 월 일	전체 명 / 동의 명

2. 노동조합/근로자대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부서	직책	주소

3. 합의내용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간주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다.

-다음-

제1조 [대상근로자의 범위] 이 합의서는 영업부 및 판매부에 속하는 사업으로 주로 사업장 밖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2조 [인정근로시간] 제1조에 정한 직원이 통상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 있어서의 업무에 종사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시간) (간주근로시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조(휴게시간) 제1조에 정한 직원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적용한다. 다만, 업무에 따라서는 정해진 휴게시간에 휴게할 수 없는 경우는 별도의 시간대에 소정의 휴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휴일근로) 제1조에 정한 직원이 특별한 지시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야간근로) 제1조에 정한 직원이 특별한 지시에 따라 야간(22:00~06:00)에 근무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기초하여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연장근로) 제2조에 따라 근무로 인정된 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